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6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김문수ㆍ이수진ㆍ이재강

양부남 • 이용우 • 이재관

문금주 • 조계원 • 신영대

양문석 • 위성곤 • 민형배

백승아 • 박지원 • 이광희

문대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금지하거나 통제한다는 신분상의 제한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의미함.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 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1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기부를 할 수 없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 누구든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		
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			
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기</u>	<u>7]</u>		
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	<u>부를 할 수 없는 자</u>		
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